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정우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247 번호

제출연월일: 2023. 11. 22.

대표발의자 : 정 우 식 의원

공동발의자 : 박 기 홍 의워

김 시 욱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걷기 사업의 활성화,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(안 제4조~제5조)
- 업무의 위탁 및 포상(안 제6조~제7조)
- 기록·관리(안 제8조)
-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: 붙임 2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6조
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
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」

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 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걷기 사업"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추진하는 걷기 관련 사업을 말한다.
- 2. "앱"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 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.
- 3. "참여자"란 울산광역시 울주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지를 두고 앱을 통해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·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겉기 사업의 활성화)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 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
- 2.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
- 3.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,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공
- 4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 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- 1.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
- 2.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
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5조(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)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1.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, 문화 상품권, 전통시장 상품권, 모바일 상품권,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
- 2.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
- 3.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

-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.
- 1.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
- 2.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
- 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관련 기관, 단체,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, 기관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8조(기록·관리)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,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기록·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1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제4조(걷기 사업의 활성화)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 다.
 - 1.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
 - 2.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
 - 3.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,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공
 - 4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 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 - 1.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
 - 2.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
 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2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 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가변적임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○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(☎052-204-4005)

붙임2

관계 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.

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 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 ·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무위탁"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 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공공위탁: 「지방자치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(이하 "공공단체 등"이라 한다)에 위탁하는 방식

나. 민간위탁: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는 방식

- 2. "위탁사무"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.
- 3. "수탁자"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을 말한다.

- 4. "재위탁"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재계약"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2장 위탁사무 및 선정

제4조(대상사무) ①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
-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· 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.
- 1. 복지 보건 건강 의료 시설
- 2. 문화·관광·체육·공원 시설
- 3. 교육, 공예, 공동체 관련 시설
- 4. 환경, 교통 관련 시설
- 5. 근로자복지, 취업지원, 직업훈련 관련 시설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수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6조(위탁계획) ① 군수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(이하 "위탁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
- 2. 목적, 필요성 및 기대효과
- 3. 범위·내용 및 타당성
- 4. 위탁기간 및 조건
- 5.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
- 6. 수탁자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
-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의회 보고ㆍ동의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- 1.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의무화한 경우
- 2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- 3. 청소, 방호 등 단순 ·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
- ②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핚하여야 한다.
- 1. 위탁사무명
- 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3. 위탁사무 내용
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5. 위탁기간
- 6. 수탁자 선정방식
- 7.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- 8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- 9.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
- 10.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(수탁자 선정기준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시설, 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
- 2. 재정 부담 능력, 책임 능력, 공신력
- 3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
- 4. 사업계획의 타당성
- 5. 고용승계 · 유지 및 근로조건
- 6.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의 투명성 ·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- 제9조(수탁자 선정)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군수는 수 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 -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사무명, 수탁자의 명칭,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무위탁심의위원회) ① 군수는 위탁사무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,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다.
 - 1. 수탁자의 선정(재계약 포함)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- 2. 수탁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・근로조건에 관한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 여 구성 · 운영한다.
- 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

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제4항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2명 이하로 하며,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 상 포함한다.
- 1.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
- 2.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- 3.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기술사 · 건축사 · 세무사 ·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- 5.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6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최초 회의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이 소집한다.
 - ③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 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 -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, 신청 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 자가 법인 ·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조사 또는 감정 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조사 또는 감정 을 한 경우
 - 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・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

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
 - 3.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 -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 - 6. 위원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
- 제16조(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결과에 불 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- 제17조(계약체결)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1. 사무위탁의 목적
 - 2. 수탁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 및 주소
 - 3.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
 - 4. 위탁기간
 - 5.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
 - 6. 수탁자의 의무
 - 7.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- 8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9.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
 - 10. 부정 사항 확인 시 화수 등에 관한 사항
 - 11.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사무의 내용, 근거, 수탁자, 위 탁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위탁기간)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.
 -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9조(재계약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

- 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.
- 1.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
- 2. 지도 · 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
- 3. 위탁사무 감사 결과
- 4. 성과평가 결과
- ③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관리 운영

- 제2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시설, 장비,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(轉貸)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, 위탁사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.
- 제21조(사무처리의 지원)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

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2조(이용료 징수 등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, 수수료, 그 밖의 비용 등(이하 "수입금" 이라 한다)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가 군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게 하 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23조(사무편람)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고,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 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 -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4조(지도・감독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・감독하여야 하며.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ㆍ점검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지도·감독 또는 검사·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적 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 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25조(위탁사무 감사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26조(위탁계약의 취소·해지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수탁자가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
 - 2.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3. 제24조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수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
 -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,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,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성과평가)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,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,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포상대상 및 적용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·군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단체에 행한다. 다 만,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-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행한다. 다만, 타 기관·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.
- 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(이하 "표창장"이라 한다), 감사장 및 감사패(이하 "감사장"라 한다), 상장 및 상패(이하 "상장"이라 한다), 모범공무원 포상,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
- 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- 1.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,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 관·단체
- 2.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
- 3.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기관 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- 1.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

- 2.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
- 3.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- 1. 각종 품평회, 경진대회,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
- 2. 학술, 예술,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
- 3.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제8조(공로패)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- 1.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
- 2.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련 기관·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
- 제9조(포상의 방법과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되,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 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통상적인 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기, 암각화 등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활용한 형태로 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 대상자의 추천) ① 포상(상장 제외)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· 실장·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 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민이 직접 추 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적심의) ① 포상은 군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

한다. 다만,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②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포상시기)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 행한다.
- 제13조(이중포상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- 제14조(포상대장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포상사실 확인)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.
- 제16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